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9.10.17(목)09:30

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 이유

○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지원 : 400백만원

○ 출연 목적

- 기능지구의 핵심적 과제인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및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특화된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사업화 지원

⇒ 기능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R&D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

○ 출연 내역 : 청주 SB플라자 과학사업화 지원 1식

※ 세부내용 ①-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

○ 기대 효과

- 청주SB플라자는 과학사업화를 위한 핵심지구로서 공공기술의

응용 및 개발연구기능이 강화되고, 연구활동 및 사업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

- 성공적인 과학 사업화 가능 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, 신기술 사업화 등 특화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 인력 배양

□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: 400백만원

○ 출연 목적

-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
- 오창벤처플라자의 방송시스템 개선 및 노후 시설 보수
- ⇒ **고유 핵심기능 수행과 사업영력 확대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 등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**
- ⇒ **기업 R&D 및 사업화,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지원**

○ 출연 내역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식

오창벤처플라자 시설 개·보수지원 1식

※ 세부내용 ㉒-③-1, ㉒-③-2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

○ 기대 효과

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한 ICT산업 및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등 재단 설립 고유기능의 차질없는 수행 및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 지역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응모 가능
- 오창벤처플라자의 시설을 개·보수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최적의 '원 루프 서비스' 지원
- 특히,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과 연계, 산학연 R&D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도모

□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: 250백만원

○ 출연 목적

- 공공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 필요
-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

○ 출연 내역 :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식

※ 세부내용 3-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

○ 기대 효과

- 강소특구 육성으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&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5. 검토의견

□ (사)충북산학융합본부

- '2020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계획안'은 과학사업화를 위한 핵심 시설인 청주SB플라자의 기술 응용 및 개발연구 기능을 강화하고, 제품화에서 창업까지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동 계획안은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에 '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, 대학 및

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'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으로 SB플라자의 과제 및 사업운영비를 지원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출연금을 통해 전년도 추진한 자체사업 실적 및 현황에 대해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□ 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

- '2020년도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안'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을 통해 충북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동 계획안은 「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운영비 등 지원) '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'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으로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공모사업 대응 및 용역비 등 재단 운영비와 오창벤처플라자의 노후 시설 개·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단,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필요성과 지속되는 재정여건의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해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□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

- '2020년도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출연계획안'은 강소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R&D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투자유도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동 계획안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'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'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으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의 기술발굴,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업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